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창원남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가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부분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관련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공고문과 같으며, 계약만료는 별도 통보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4조(용역범위)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필요한 급식 시설 및 기구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 청소, 세척, 잔반 처리, 위생관리 등 급식작업 전 과정
2. 학교급식 사업장 내 급식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3.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학교”가 계약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품위생·계약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학교”와 합의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학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용 및 개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시설·기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형태) ① 재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희망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은 본교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식당에서 직접 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급식일 및 급식시간) 급식일 및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사일정 등으로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급식시간			비고
		중식	석식	토요일 중식	
급식시간	중학교	12:10-12:50			
	고등학교	11:30-12:10	16:50-17:50	12:00-12:50	

제8조(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중식 기준 학생 1식당 6,250원, 그 외 6,280원 (위탁용역비 산출액 참조)으로 하되,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조(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용역수행 조직체계,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반드시 포함)
2. 계약 내역서
3. 급식 조리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보안각서
5.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예상급식수가 3분에 1이상 감소하거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①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기구는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만, 수저, 물컵, 칼·도마 소독기, 소모품(세제 포함),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급식시설 및 기구의 분실 및 파손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사무실은 영양교사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단, 조리종사자 휴게실은 학교에서 제시한 공간에 별도로 제공한다.

제11조(급식종사자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노무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배치하며, 적정 인원의 조리원을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조리, 배식,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 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종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식종사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이며, 급식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2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식중독 포함)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질병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⑤ 조리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학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종사자 교체) “학교”는 급식종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근무태도 불량, 명령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행위,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등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 HACCP 규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칼 및 도마사용에 있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들의 당일 조리, 배식, 청소 등 업무가 완료될 시 급식소 및 작업장 소등, 각종 전열기기 차단,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급식종사자 중 조기출근자 및 최종 퇴청자는 학교 당직근무자에게 알리고 열쇠장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월“학교”에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급식횟수, 급식인원 및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감액내용을 확인 후 법정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한다.

③인건비부분은 실제 정산지급분을 지급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교”는 1개월 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이행 기간 중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4.“계약상대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학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계약상대자”가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계약상대자”와 “학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5.“계약상대자”가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급식운영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재위탁하였을 때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할 시에는 “학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제18조(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① 용역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개시 전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권리의무 등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0조(통보방식)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보·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되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급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 및 요구사항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